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0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소외자의 관광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제4항)

- 1)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2)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

나.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추가함(안 별표 2)

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 이용료 전액 반환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0. 12.~11. 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중전 제2조) 중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를 “수승대관광지”로 “일대(297,679제곱미터)”를 “일대 297,679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중전 제4조)제5호 중 “관광지”를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라 한다.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중전 제8조)에 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중전 제9조) 제목 “(입장거절 및 퇴장)”을 “(입장거절과 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을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집단놀이(캠프파이어)”를 “집단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야영 및”을 “야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남/여)”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li> <li>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li> <li>고성방가, 집단놀이(캠프파이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li> <li>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li> <li>천재지변(태풍, 호우 등)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li> <li>「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li> <li>「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li> <li>「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li> </ol> <p>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p> <p>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li> <li>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사람</li> <li>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li> <li>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취사행위 등을 하는 사람</li> <li>천재지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의 필요성을 느낄 때</li> </ol>

<신 설>

현 행	개 정 안
<p>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p> <p><u>제10조~제14조</u>(생략)</p>	<p>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p> <p><u>제7조~제11조</u>(현행 제10조부터 제14조와 같음)</p>

[별표 2]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료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u>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u>	<신 설>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u>그날</u> 예약을 취소할 때	반환하지 않음

- 반환기준 시간은 24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변경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 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사무실
					자택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속설비				
	그밖의사항				
변 경 사 유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별지 제1호의3서식]

##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취소 신청서

공연.행사명			
사용일자		사용장소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또는 대표자명(남 / 여)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